
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4. 3. 22.>

위탁 수수료 기준(제10조 관련)

징수금액	위탁 수수료
5백만원 이하	징수금액 × 100분의 10
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	50만원 + (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00분의 8)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810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00분의 5)
5억원 초과	2,810만원

비고: 위 표에서 “징수금액”은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을 말한다.